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87
----------	-----

2024. 1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진희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월 24일

-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진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2조 및 제3조)
-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, 단장의 직무, 회의의 소집 및 운영, 안전 검토 및 의견청취, 간사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「재해구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-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지방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수행업무와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3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와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소집, 회의운영 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조례안 예고(`24. 1. 11.~`24. 1. 1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`24년 1월 기준 3개 시도에서(경북·전북·강원) 관련 조례가 시행 중임.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4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충북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난 `21년 7월에 제1기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현재 2기가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, 제정안은 회의 운영, 안전 검토 및 의견 청취 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화되어 회의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)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조(심리지원단의 구성) ① 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재난심리, 정신건강,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2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 등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「충청북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정신건강센터장

5. 상담학회, 재해구호협회 등 심리회복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의 소속 임직원

6. 심리회복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7. 그 밖에 심리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한다.

③ 새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단원의 임기)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리지원단을 대표한다.

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의 소집) ①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, 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회의 운영) ①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안전 검토 및 의견 청취)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안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상정된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(간사) 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제10조(수당 등의 지급)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위촉 단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, 안전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·운영 중인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 단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직 무 윤 리 사 전 진 단 서

연번	진 단 내 용	체 크 사 항	
1	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[]	아니오 []
2	심리지원단의 심의·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	예 []	아니오 []
3	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 등의 당사자이다.	예 []	아니오 []
4	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·용역·계약 또는 연구·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[]	아니오 []
5	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·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[]	아니오 []
6	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[]	아니오 []
7	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[]	아니오 []
※ ‘예’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직무윤리 서약서

직 위:

성 명: ○ ○ ○

상기 본인은 심리지원단의 단원(단장)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2. 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3. 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·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4. 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5. 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
6. 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7. 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8. 그 밖에 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○ ○ ○

(서명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관계법령

□ 재해구호법

제8조의2(중앙 및 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중앙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을, 시·도에 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시·도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각각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1. 29.]

□ 재해구호법 시행령

제4조의4(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·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(이하 “시·도심리지원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2. 지역 보건·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
3.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
4. 심리회복지원 관련 자원 운영방안 마련
5.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심리지원단의 단장(이하 이 조에서 “단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·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

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 7. 28.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14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(이하 “대규모재난”이라 한다)의 대응·복구(이하 “수습”이라 한다)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7. 7. 26.>

<이하 생략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13조(대규모 재난의 범위)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. <개정 2012. 8. 23., 2014. 2. 5.>

1.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중앙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재난
2.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중앙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

[전문개정 2010. 12. 7.]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·피해자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 참석 및 안전 심의에 따른 수당 지급

3. 관련조문

- 제10조(수당 등의 지급)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전을 검토한 위촉 인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, 안전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5년간('24~'28년) 추계

- 기 운영중인 위원회로 연1회정도 안전 심의 중이며, 당연직 5명(공무원), 위촉직 12명(민간전문가)으로 구성되어 위촉직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
- 연간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 및 재난발생 시 발생하는 안전에 대하여 매년 대면심의 1회, 서면심의 1회 실시
 - 대면심의 : $[100\text{천원}^{(\text{기본})} + 30\text{천원}^{(\text{2시간초과})} + 50\text{천원}^{(\text{원거리수당})}] \times 12\text{명} = 2,160\text{천원}$
 - 서면심의 : $30\text{천원}^{(100\text{p이내})} \times 12\text{명} = 360\text{천원}$

나. 추계 결과 : 12,600천원(2,520천원×5년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-		-	-	-	-	-	-
세 출	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재난심리회복지원단 운영	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재원 조달	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자체 수입	소 계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	지방세	2,520	2,520	2,520	2,520	2,520	12,600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시군비		-	-	-	-	-	-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, 자담 등)		-	-	-	-	-	-